



이런 점이 궁금합니다.
Q&A



Q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- ▶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이면서 중복장애인입니다.
- ▶ 보행상 장애여부는 '장애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Q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는 모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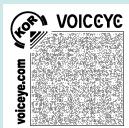
- ▶ 아닙니다.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.

Q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는 어디에서 하나요?

- ▶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시 담당 공무원에게 종합조사 의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.

Q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도 의뢰기한이 있나요?

- ▶ 별도의 의뢰기한은 없으며, 조사 대상자인 경우 이동지원 종합조사 의뢰 가능합니다.



**장애인을
보다 세심하게 고려하고,
장애인 복지서비스를
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
확대해 나가겠습니다.**

2020년 10월 30일

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



문의

장애인등급제 폐지 안내

보건복지 상담센터 129
한국장애인개발원 02-3433-0708, 450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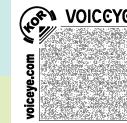
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

국민연금공단 1355

장애인등급제 폐지 제도 안내 웹페이지

www.koddi.or.kr 접속 ▶ 사업 ▶ 장애등급제 폐지





·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·

‘장애등급’은 ‘장애정도’로 변경



의학적 기준
(1~6등급)

심한 장애인
(1~3등급)

장애정도

심하지 않은
장애인
(4~6등급)

장애인의 욕구와 실태 파악 강화



-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조사
- 「서비스 지원 종합조사」 도입과 단계적 확대

사례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



- 민관 관이 협력하여 장애인 중심의 사례관리 강화
 -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동행상담
 - 시·군·구마다 「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」 구성 및 운영

·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·

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

’19년 7월
일상생활지원

- 활동지원
- 보조기기 교부
- 거주시설 입소
- 응급안전알림
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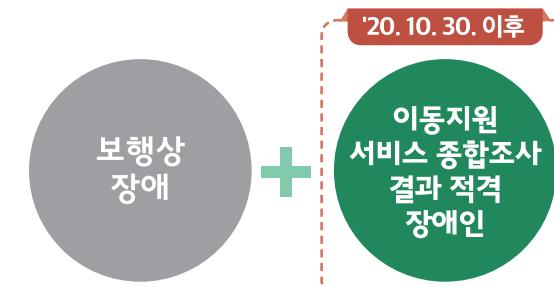
’20년 10월 30일
이동지원

- 장애인 전용
주차구역 주차표지
- 특별교통수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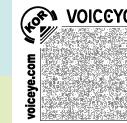
- 2020년 10월 30일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
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,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 체계

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이동지원 서비스*대상 확대

(기준) 보행상장애 + (20년 10월 30일)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한 경우



* (이동지원 서비스)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, 특별교통수단



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

- 적용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, 특별교통수단
- 대상자 현행 ‘보행상 장애기준’에 해당하지 않는 ‘중복장애인’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
- 의뢰방법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의뢰 요청
- 구비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

장애유형	제출 자료
지체장애	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, 지체장애용 소견서
뇌병변장애	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, 뇌병변장애용 소견서
시각장애	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, 시각장애용 소견서
그 외 12개 장애유형	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

- 12개월 이내 발급받은 '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'로 대체 가능

- (조사결과)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지표 (성인 7개, 아동 5개)를 조사하여,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“이동지원 서비스 지원”

